#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68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 안호영·김주영·한병도

박정현 · 복기왕 · 김윤덕

윤준병 • 신영대 • 박홍배

이학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어업·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③ (생 략) 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del>4</del>)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 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 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4. (생 략)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생 략)
  -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

<u>2029년 12월 31일</u>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
<u>o</u> )
②
<u>2029년 12월 31일</u>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7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 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 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 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 <u>2029년</u>	12월
	<u>31일</u>		
제	16조(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 2. (생략)
- ② (생 략)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전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u>2029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u>2029년 12월 31</u>
<u>==== = = = = = = = = = = = = = = = = =</u>
<u>-</u> 1.·2. (현행과 같음)